

의안번호	2217387
의 퇴 인	정연욱의원
회 답 일	2026.4.30.
추계번호	26C1434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7조의2 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	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(제1항) 6의3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- (현행)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- (개정) 관광지 및 관광단지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7조의2 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(안 제47조의2)

- 개정안은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(이하 “관광지 등”) 조성계획 상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로 한정하던 현행 규정¹⁾을 삭제하여,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

1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6조의7(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)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.

- 이에 따라 관광지 등의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외 구역에도 응급장비를 추가 구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겠으나, 개정안 제47조의2제5항은 응급장비의 설치 위치, 설치 간격 등의 설치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 설치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보건복지부는 응급장비 설치비의 50%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응급장비 총 설치비의 50%가 추가재정소요에 해당함
 - 보건복지부는 2026년 ‘응급처치 활성화 지원’ 사업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8억 2,200만원의 예산을 편성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